

# 광명시의회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 운영규정

제정 2018. 12. 21 의회훈령 제 6호  
일부개정 2024. 2. 5 의회훈령 제11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광명시의회에 출입하는 언론인의 등록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광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언론이란 해당법률에 의해 설립된 방송, 신문, 인터넷 신문, 통신사, 기타 특수 전문지(주간, 월간, 잡지 등)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 및 취재언론사 등록) ① 이 규정은 광명시의회(이하 「의회」 이라 한다)에 출입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 소속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다. <개정 2024. 2. 5>

1. 전국지, 지역일간지 :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 가목, 나목에 따른 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언론사
2. 주간지, 인터넷 신문 :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다목, 라목, 제2호에 따른 광명시에 본사를 둔 언론사
3. 방송사 : 「방송법」 제2조에 따른 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로 고정 배치된 기자가 수시로 광명시를 출입하여 취재활동을 하는 방송사
4. 통신사 :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

②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한다.

제4조(행정광고 등 운용기준) ① 행정광고 집행대상 언론사는 제3조에 따라 의정취재 언론사로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한 홍보매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2. 5>

광명시의회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 운영규정

1. 정부광고 지표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열독률 등
  2. 자체생산 기사의 게재건수, 비율 및 지속성
  3. 의정보도 기사의 게재건수
  4. 매체의 영향력 및 광고효과
  5. 제3조에 따른 출입등록 여부 및 출입등록 후 경과연수
  6. 그 밖에 중요사항으로 광명시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언론사별 행정광고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하며, 비공개로 한다. <개정 2024. 2. 5>

제5조(등록취소) 의정취재 언론사로 등록된 언론사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출입등록을 취소한다.

1.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
2. 기자가 의원 개인에게 광고를 요구하거나 광명시의회의 청렴실천,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
제6조(기타)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취재언론사로 등록한 언론사는 이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. 단, 행정광고 집행은 광명시의회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 운영규정 제3조를 준용한다.

부칙 <2024. 2. 5 의회훈령 제11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